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u>공포한 날</u>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u>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u>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56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서삼석 · 허종식
위성곤 · 김한규 · 서영교
이해식 · 김남근 · 서영석
이재관 · 한준호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 ----- -----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u>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u>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